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온 실 가 스 배 출 권 의 할 당 및 거 래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하수도법」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하거나,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하수처리 부하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13. ~ 2. 2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과 협의 완료(규제 미해당)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9항) 중 “제2항·제4항·제6항 및 제8항”을 “제2항·제4항·제6항·제8항 및 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0항) 중 “제2항·제4항·제6항 및 제8항”을 “제2항·제4항·제6항, 제8항 및 제10항”으로 한다.

⑨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「하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
가. 「물환경보전법」

- 나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다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라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마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⑩ 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증가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) ① ~ ⑧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(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 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.</u> 1. <u>「하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</u> 2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의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</u> 가. <u>「물환경보전법」</u> 나. <u>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 다. <u>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 라. <u>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</u>

<u><신 설></u> ⑨ 제2항·제4항·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추가 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. ⑩ 제2항·제4항·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. ⑪·⑫ (생략)	<u>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</u> 마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⑩ 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증가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. ⑪ 제2항·제4항·제6항·제8항 및 제10항----- ----- ----- -----. ⑫ 제2항·제4항·제6항, 제8항 및 제10항----- ----- --. ⑬·⑭ (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경제과	
연 락 처	044-201-6595